도시관리계획[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, 자동차정류장)] 결정(변경)(안)
- 계양구 작전동 834번지 일원 -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[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 (도로, 광장, 자동차정류장)] 결정(변경)안
- 계양구 작전동 834번지 일원 -

의안 번호	

제출연월일 : 2010. 6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○ 작전역 일원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및 BRT[1] 시범사업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서 향후 인천광역시 환승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음

○ 이에 따라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환승활동 및 상업·문화·업무 등 기능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여 환승교통의 효율적 처리 및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

2. 주요골자

○ 의견청취 내용

- 위 치 :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34번지 일원
- 변경내용
  - 용도지역
    ⇒ 제2·3종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
  - 도시계획시설
    ⇒ 도 로 : 광로 변경 및 대로 4개 노선 신설
    ⇒ 광 장 : 교통광장 폐지(34,858㎡)
    ⇒ 자동차정류장 : 복합환승센터 신설(28,932㎡)
- 사업비 : 3,940억원
-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(교통기획과)

---

1) BRT(BUS Rapid Transit) : 간선급행버스체계

3. 추진경위

○ ‘2010. 04. 21 :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신청(교통기획과→개발계획과)

○ ‘2010. 04. 29 : 주민의견청취 및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 열람공고(14일간)

○ ‘2010. 05. 10 : 관계행정기관(부서) 협의(완료)

○ ‘2010. 05. 14 : 협의의견 조치계획서 제출(교통기획과→개발계획과)

○ ‘2010. 05. 14 : 사전환경성검토 협의

4. 참고사항

○ 주변여건 여건검토

-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남측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부평구와 인접하며, 주변으로 광역가로망, 간선가로망, 철도망 등이 잘 발달되어 있음
- 광역가로망으로 경인고속도로(부평IC)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(계양IC)가 위치하고 있고 간선가로망으로 봉화로(BRT 시범사업 추진), 계양로, 경명로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, 철도망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(작전역)이 사업대상지를 지나고 있음

※ 인천 청라 ~ 서울 화곡간 BRT 시범사업

⇒ 연장 : 23.1㎞(17개 정거장)

⇒ 사업시행자 : 수도권교통본부

⇒ 사업기간 : 2010년 7월(착공 예정) ~ 2015년

[BRT 시범사업 노선도]

○ 토지소유현황

구 분	계	국토해양부	인천광역시	비 고
면 적(㎡)	28,932	1,496	27,436	
필지수(개)	20	7	13	
구성비(%)	100.0	5.2	94.8	

○ 토지이용현황

- 용도지역은 현재 제2·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,
- 도시계획시설(도로 : 광로2-5호선)로 결정된 지역이나 현 이용현황은 도로, 주차장(196면), 녹지 등으로 사용 중임
- 대상지 남측과 북측은 교통광장(교차점광장)이 결정되어 있으며, 현 이용현황은 도로로 사용 중임

※ 광로2-5호선 : 건고 제427호['86.9.29 최초 결정(경인운하 폐지)]

※ 대상지 이용 현황 : 도로(11.6%), 주차장(22.6%), 녹지(65.8%)

[토지이용현황도]

○ 교통처리계획(안)

– 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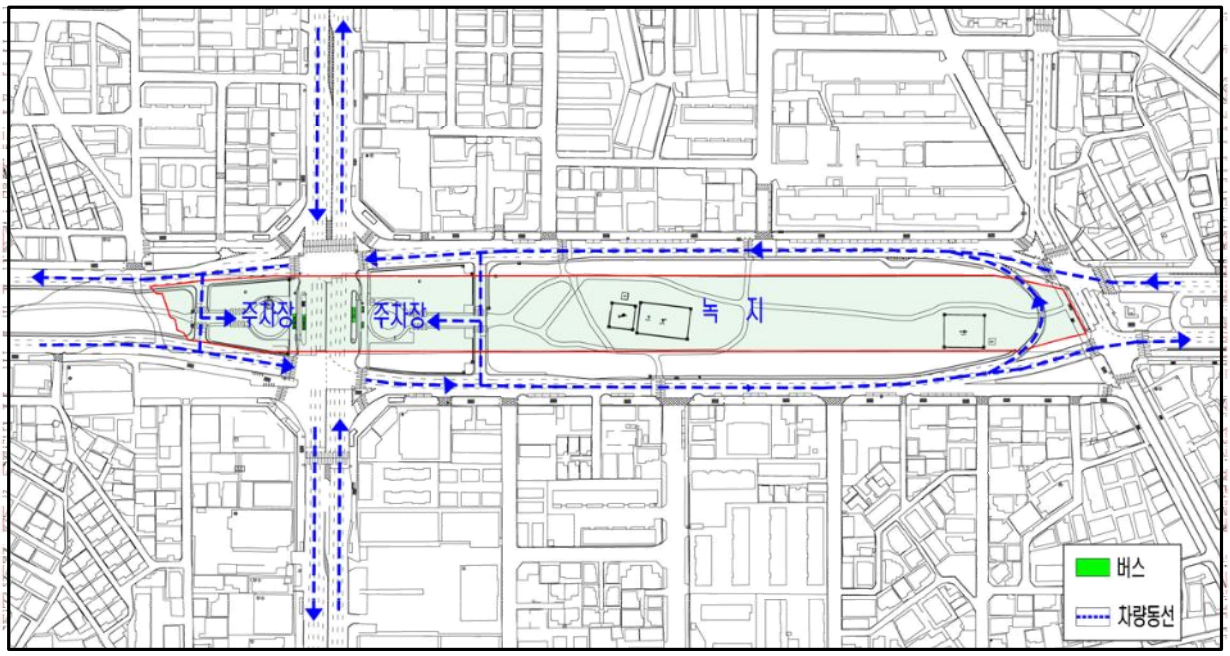

–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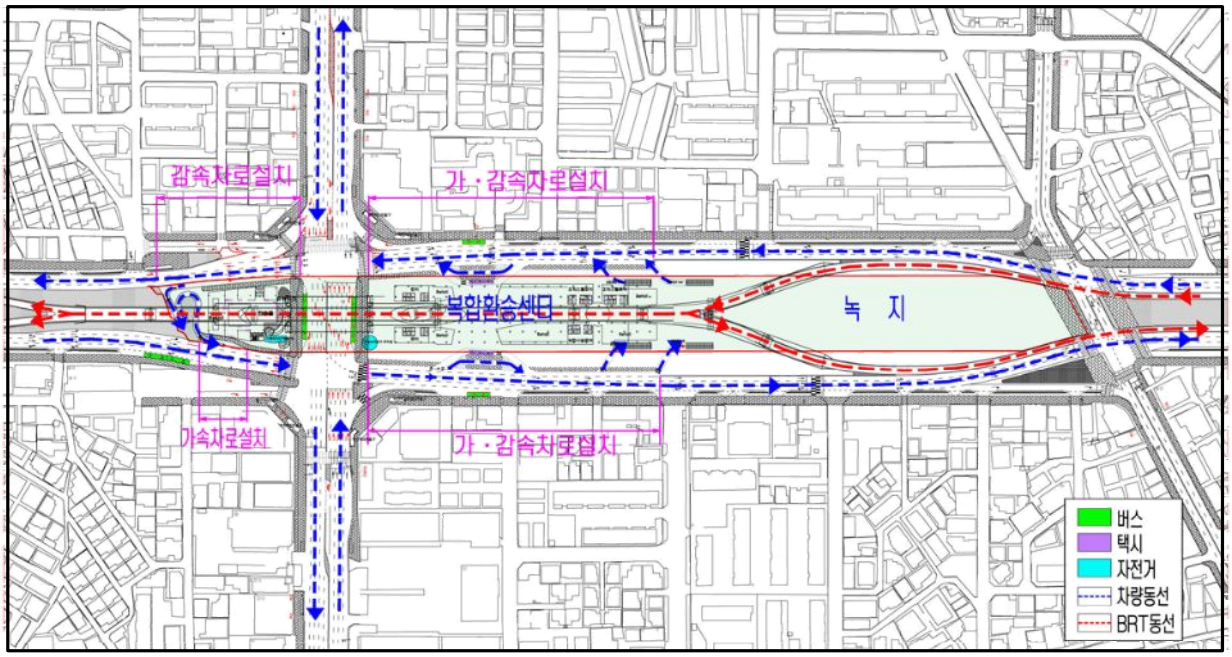

⇒ A(감속차로) : B=3.5m, L=90m

⇒ B(가속차로) : B=3.5m, L=30m

⇒ C(가·감속차로) : B=3.5~6.75m, L=190m

⇒ D(가·감속차로) : B=3.5m, L=195m

⇒ 차량동선은 기정과 같이 일방통행으로 하며, 지하철, BRT, 버스, 택시, 자전거 등 교통수단 간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환승시설 개선

○ 연계교통 및 환승동선계획(안)

- 작전 복합환승센터를 통하여 지하철 및 BRT와 기타 연계교통수단인 버스, 택시, 자전거 등과의 환승교통을 처리

⇒ 지상3층 : BRT 환승

⇒ 지상1층 : 연계교통수단 환승(버스, 택시, 자전거 등)

⇒ 지하2층 : 지하철 환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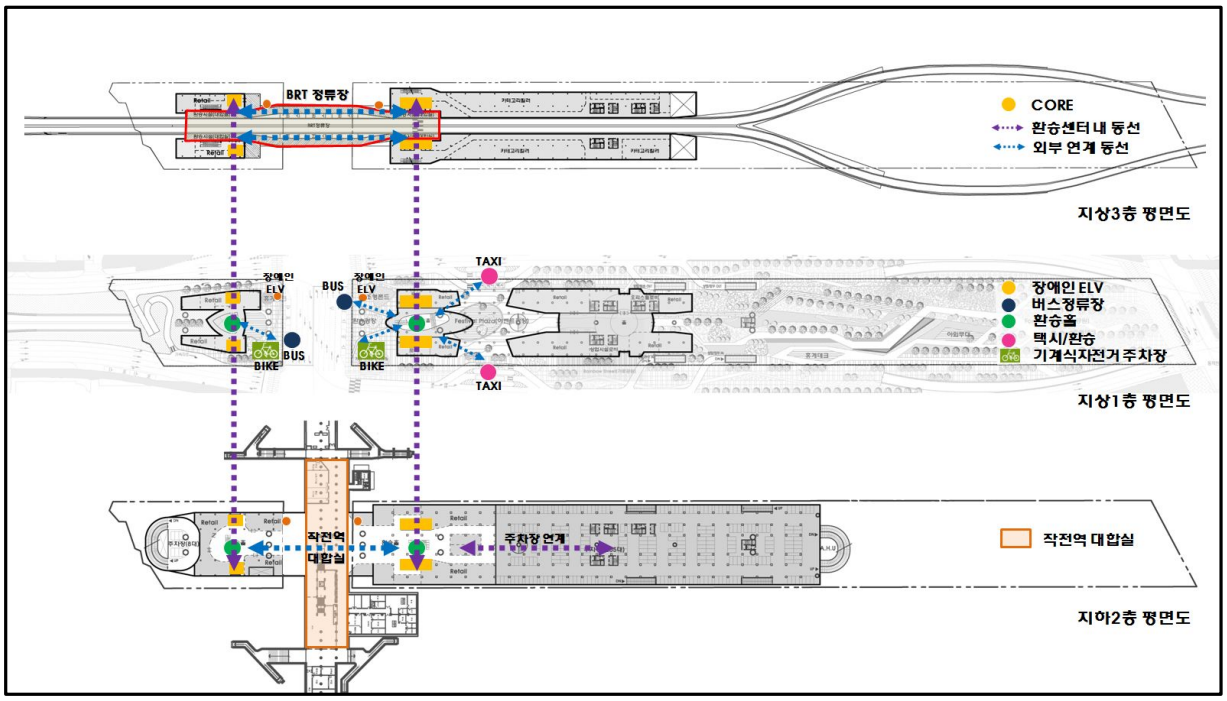

○ 복합환승센터 건축계획(안)

– 건축개요

구 분	전체구역	A 구 역	B 구 역
대지면적	26,936㎡	3,826㎡	23,110㎡
주요용도	환승시설, 판매시설, 업무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교육연구시설		
건축규모	지하 6층 지상 21층(78m)	지하 5층 지상 9층	지하 6층 지상 21층
건 폐 율	33.67%	48.35%	31.24%
용 적 률	311.90%	354.00%	304.93%
조경면적	4,075.4㎡(법정면적의 100.9%)		
주차대수	1,545대(법정대수의 115.3%)		

– 배치계획도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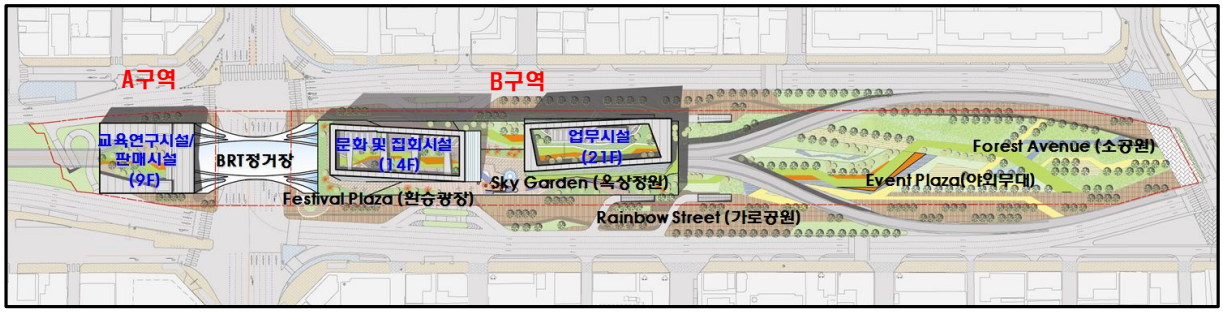

– 입·단면 계획

• 입면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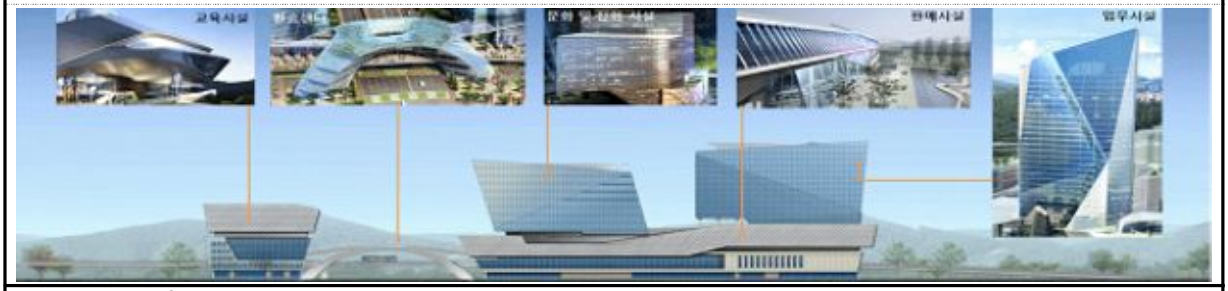

• 단면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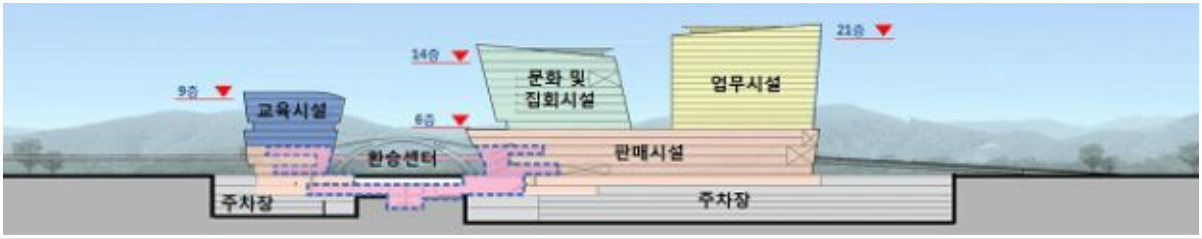

○ 경관검토

조망점		조망점 1	•일부 시각적으로 차단되나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큰 변화 없음
조망점 2	•전면부 6층 건축물에 의해 일부 조망되며, 지역경관 변화에 영향 주지 않음	조망점 3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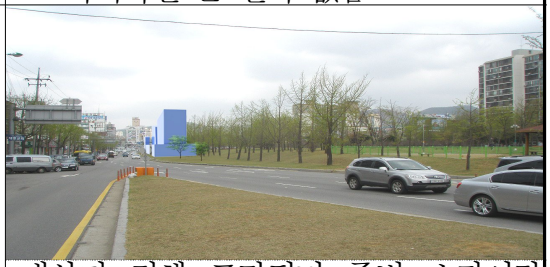 •대상지 전체 조망되며 주변 스카이라인에 큰 변화 없음

5. 의견청취

○ 열람공고 : 2010. 04. 29 ~ 2010. 05. 12 (14일간)

- 결 과 : “의견없음”

6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	28,932	-	28,932	100.0	
주거지역	제1종전용주거지역	-	-	-	-	
	제2종전용주거지역	-	-	-	-	
	제1종일반주거지역	-	-	-	-	
	제2종일반주거지역	15,531	감)15,531	0	0.0	
	제3종일반주거지역	4,852	감) 4,852	0	0.0	
	준주거지역	8,549	증)20,383	28,932	100.0	

※ 결정(변경) 사유 : 복합환승센터 설치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
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-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광로	2	5	37.8~70	주간선 도로	8,800	부천 시계	원창동 31호 광장	일반 도로		86.09.29	
변경	광로	2	5	50~70	주간선 도로	2,849	부천 시계	중로 1-32	일반 도로			
신설	광로	2	가	37.8~50	주간선 도로	5,272	작전동 834번지	원창동 31호 광장	일반 도로			
신설	대로	1	가	35	보조간선 도로	496	광로 3-8	중로 1-32	일반 도로			
신설	대로	1	나	35	보조간선 도로	109	광로 3-8	소로 1-9	일반 도로			
신설	대로	2	가	30	보조간선 도로	452	광로 3-8	중로 1-32	일반 도로			
신설	대로	2	나	30	보조간선 도로	110	광로 3-8	소로 1-8	일반 도로			

※ 결정(변경) 사유 : 복합환승센터 설치 및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위한 노선 변경 및 신설

- 광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-	광장	교통광장	계양구 작전동	34,858	감)34,858	0	'88.9.30	

※ 결정(변경) 사유 : 복합환승센터 설치 및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위한 교통광장 폐지(대로 4개 노선 신설)

- 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-	자동차 정류장	복합환승센터	작전동 834, 831-10번지 일원	-	증)28,932	28,932		도로(광3-8) 철도(도시철도) 입체결정

※ 결정 사유 :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·문화·업무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복합환승센터 신설

-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사항

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(m)	비 고
60% 이하	500% 이하	90m 이하	

7. 향후 추진계획

○ 2010. 07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붙임 : 1.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.
2. 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 1부.
3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 1부.
4. 관계행정기관(부서) 협의결과 1부. 끝.

위 치 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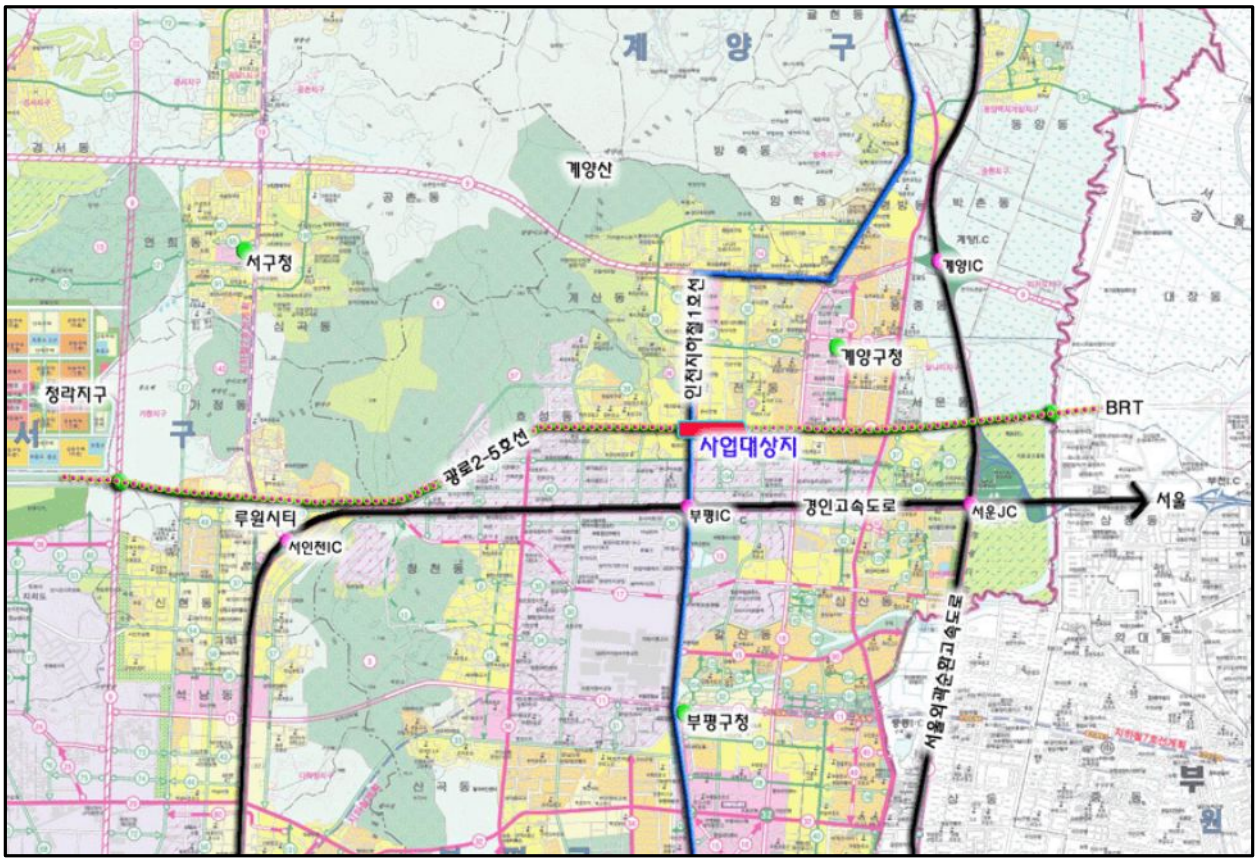
계 양 구
계양산
서구청
정각지구
서
구
광로2-5호선
인천지하철1호선
계양IC
계양구청
BRT
사업대상지
경인고속도로
서운JC
서울
루원시티
서인천IC
부평IC
부평구청
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
부
원

전경사진

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

○ 기 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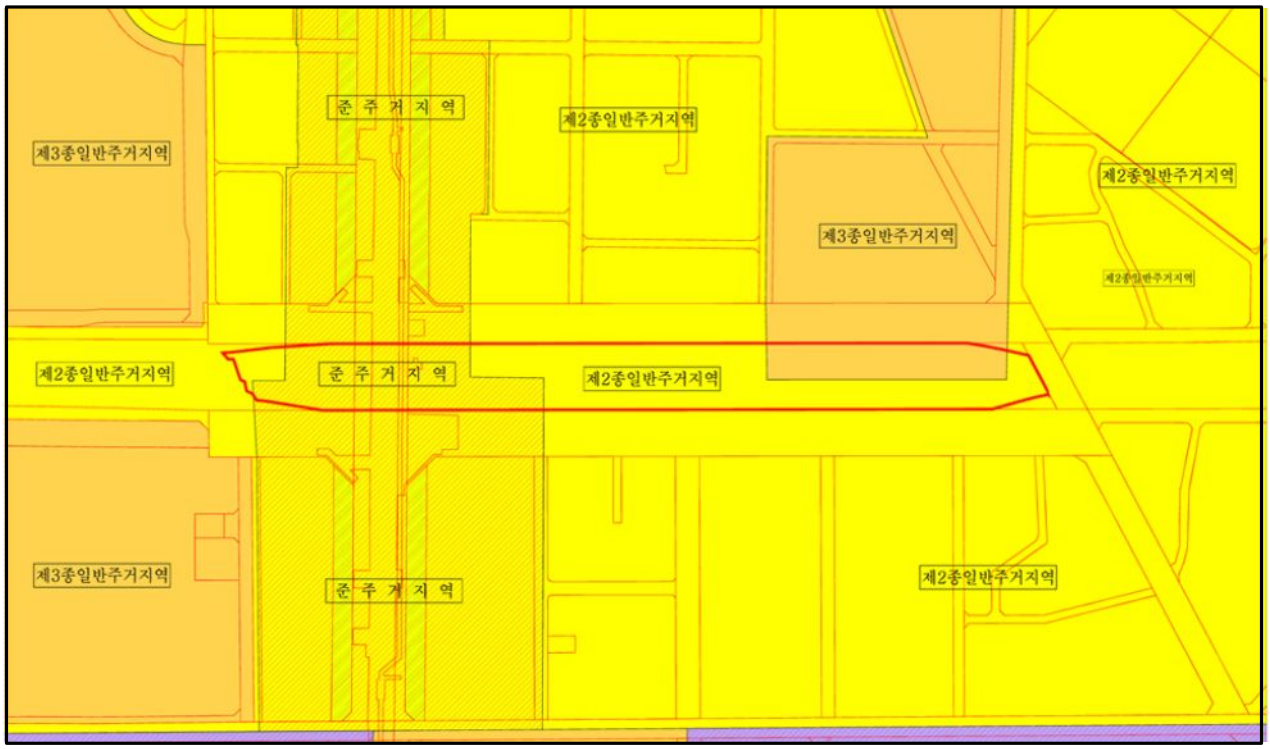

○ 변 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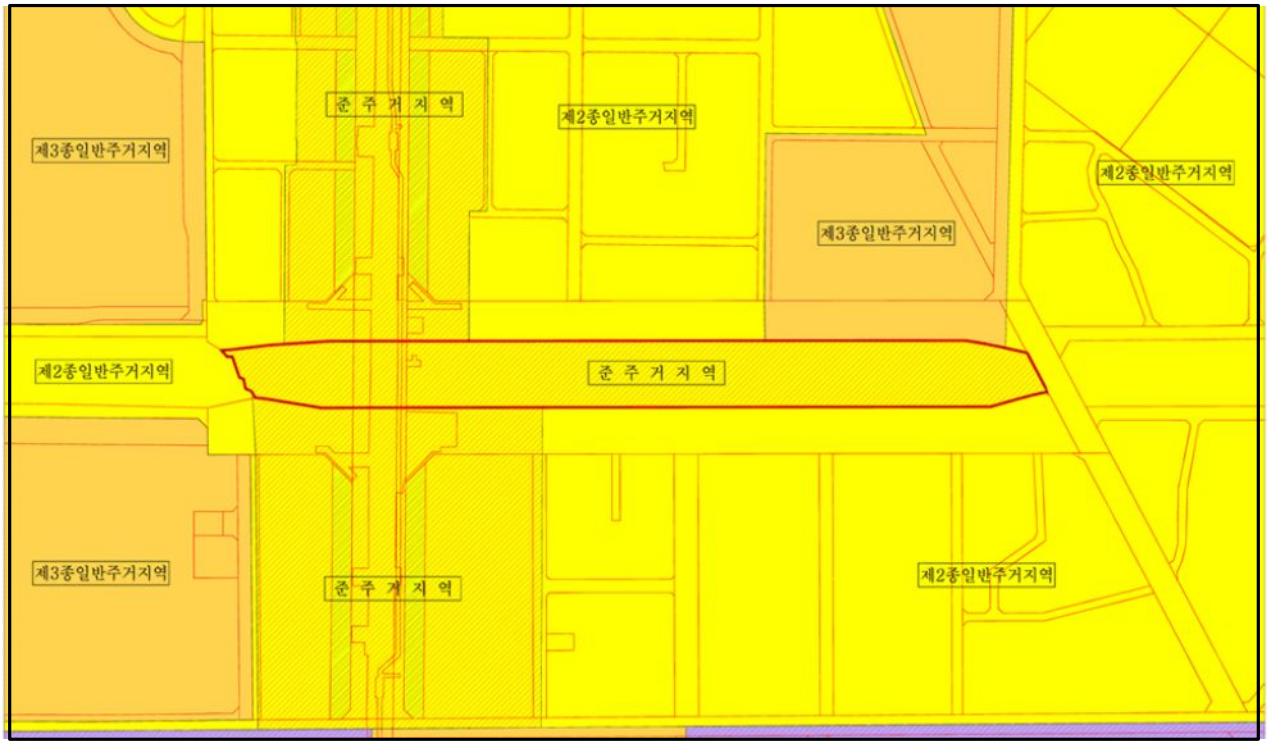

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

○ 기 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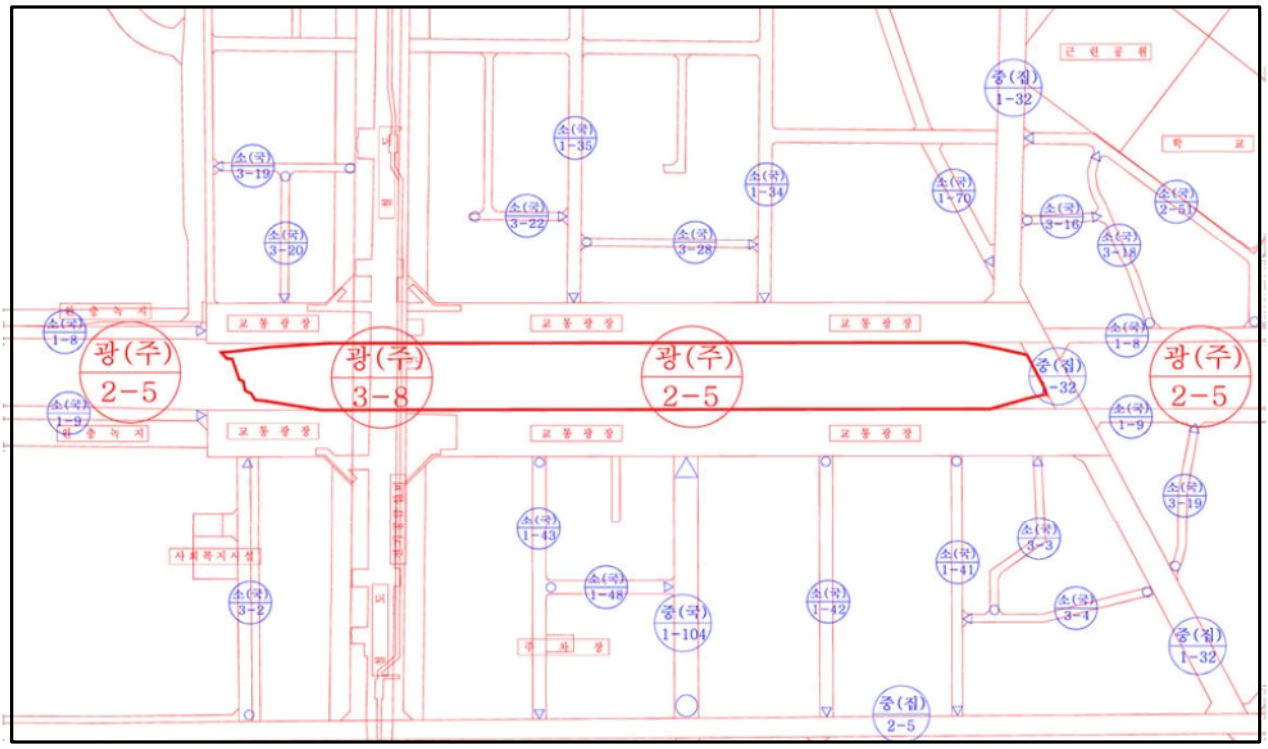

○ 변 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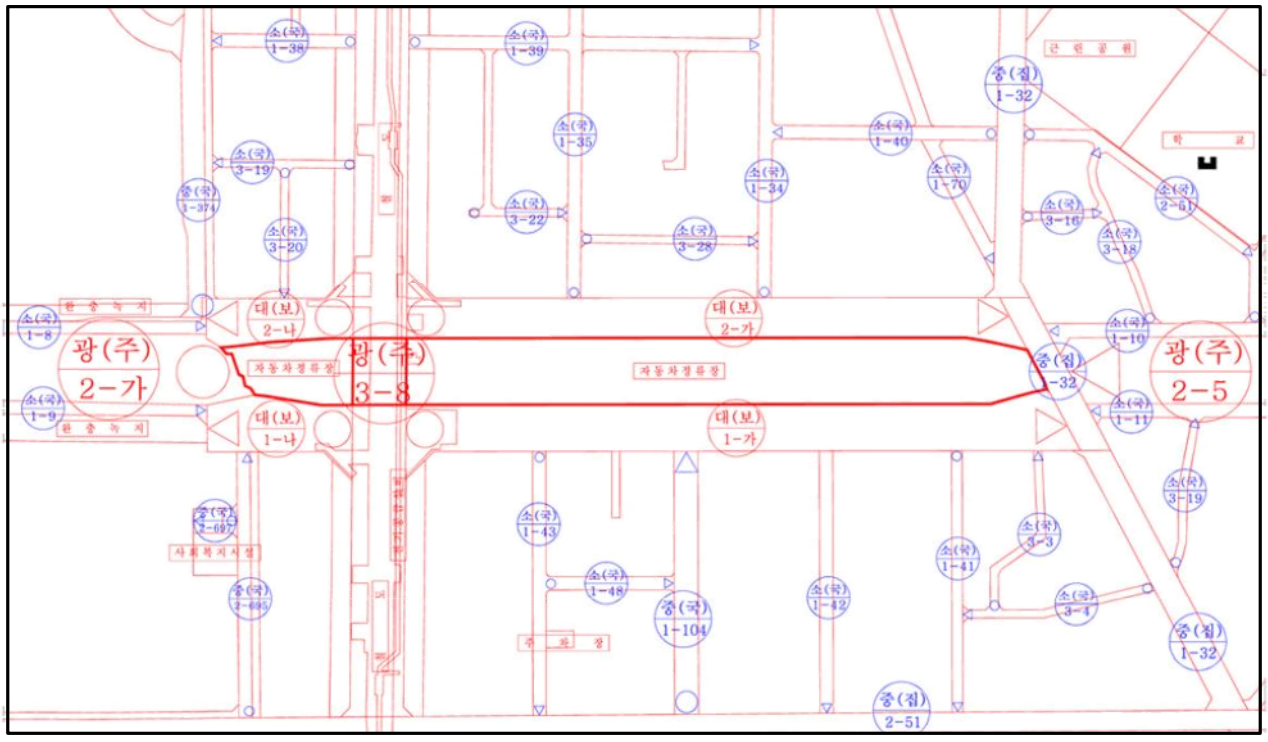

관계행정기관(부서) 협의결과

협의부서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교통기획과	○ 본 사업은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제45조에 의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으로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시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 개별법에 의한 인·허가전까지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에서 규정한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 및 협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○ 향후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 전까지 아래사항에 대하여 보완·반영하시기 바람	○ 관련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, 인·허가전까지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절차를 이행하겠음	반영
	- 사업지 차량 진출·입구의 위치 및 접속형태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(좌회전 대기길이, 엇갈림 구간, 인접교차로의 영향을 감안)	○ 사업지 진출입구의 위치 및 접속형태 등을 재검토하여 향후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전까지 보완·반영하겠음	반영
	- 환승수단(지하철, BRT, 시내버스, 자전거, 택시, 승용차)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동선 및 시설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람	○ 장래 교통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이용객이 많은 순으로 환승수단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동선계획을 수립하겠음	반영
	- 환승수단간 보행자의 수직·수평 환승동선 및 환승거리, 환승시간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	○ 현재 관계부처 협의중인 『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(안), 국토해양부』의 고시후 동기준에 의거 환승동선 등에 대한 검토를 수립하겠음	반영
	- K&R[2] 및 T&R[3] 지점과 작전역4거리가 인접하여 차량의 엇갈림, 정차대기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재검토하시기 바람	○ 사업지 택시 및 환송정차대의 위치 및 접속형태 등을 재검토하여 향후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전까지 보완·반영하겠음	반영
	- 최근 범정부차원의 보행문화 및 신호체계개선 등을 포함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람	○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단계별 주요실천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겠음	반영
	- 대중교통 및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체적인 시설계획 수립시 '장애물 없는 생활환경'(Barrier Free) 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	○『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』등 관련규정에 의거 "무장애 시설"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지 내외부의 시설계획 수립시 반영하겠음	반영
	-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설치지점 및 수량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 전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	○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은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시설물 설치전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	반영

2) K&R(Kiss & Ride) : 배웅주차장

3) T&R(Taxi & Ride) : 택시주차장

협의부서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교통 기획과	- 사업지 첨두시와 주변가로 첨두시를 모두 비교하여 검토하시기 바람 - 효성4거리, 작전역4거리, 동작전4거리에서의 U-turn 처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존치하거나 대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- 작전역4거리에서 방향별 좌회전이 원활하도록 노면표시, 회전반경 등을 보완하고, 교차로를 중심으로 기하구조를 단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시기 바람 - 신호운영계획과 노면표시가 일치되도록 수정하시기 바람	○ 사업지 첨두시와 주변가로 첨두시를 모두 비교하여 분석하겠음 ○ 기존 U-turn처리방안은 BRT노선계획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며, 이에 따른 U-turn처리 등 별도의 대안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○ 작전역4거리에서 방향별 좌회전이 원활하도록 노면표시, 회전반경 등을 보완하고, 교통섬 및 도류화 설치 등 기하구조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○ 신호운영계획과 노면표시가 일치되도록 수정하였음	반영 반영 반영 반영
대중 교통과	○ 의견없음	-	-
도로과	○ 동 건은 교통수단간 원활한 환승활동 지원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사항이긴 하나 기존 도로의 기능(차로, 보도, 기타 시설물)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함. ○ 중로급 이상 도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전에 번호를 부여받을 것. ○ 사업시행시 주변가로망(최고 8.2% 증가)과 교차로(최고 6.4%)에 영향을 미치는바 개선대책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함. ○ 기타 도로 시설물 등은 관리청별로 별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함.	○ 기존 도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음 ○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전 도로번호를 부여받겠음 ○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완화차로 확보, 차로신설, 신호운영개선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심의를 득하겠음 ○ 기타 도로시설물 등은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음	반영 반영 반영 반영
교통 관리과	○ 주차부문 검토의견 - 교통성검토시 주차수요 분석(추정방법별 비교) 및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점·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람.	○ 본 시설은 『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』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(舊교통영향평가) 수립대상으로 본 교통성검토에서는 『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지침, 국토해양부』의 작성지침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수요 예측은 원단위법을 적용하였으며,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추가 제시하여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심의를 득하겠음	반영

협의부서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교통 관리과	- 부설주차장 진출입동선 및 배치계획 등 세부적인 도면을 첨부하여 협의하시기 바람	○ 부설주차장 진출입동선 및 배치계획 등 세부적인 도면을 첨부하여 협의하였음	반영
	- 이용자들의 주차편익, 안전도모 및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안내시스템(잔여대수 표시기, 차단기 등)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	○ 기본 및 실시설계시 주차안내시스템 설치를 검토하여 반영하겠음	반영
	- 최근 대형승용차 보급확대 및 RV차량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일정 비율을 중대형 주차구획(2.5m×5.1m)으로 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람	○ 기본 및 실시설계시 중대형 주차구획 설치를 검토하여 반영하겠음	반영
건설 심사과	○ 국·공유지 용도폐지 신청, 사용수익허가는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	○ 계양구와 별도 협의하겠음	반영
	○ 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】 제65조 규정에 의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,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	○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겠음	반영
	○ 실시계획인가 전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세목 정리한 공공시설조서 및 측량도(현황+지적+도시계획), 현황사진 등을 첨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.	○ 공공시설조서, 측량도, 현황사진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협의하겠음	반영
	○ 아울러, 우리시는 역점사업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원도급 49% 이상 및 하도급, 인력, 자재, 장비가 60% 이상 적극 참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【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】 제8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.	○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검토 반영하겠음	반영
공기업민원 담당관	○ 의견없음	-	-
도시계획과 (상임기획단)	○ 의견없음	-	-
환경정책과	○ 의견없음	-	-
재난관리과	○ 의견없음	-	-

협의부서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도시디자인 추진단	○ 인천의 랜드마크가 되는 주요 공공건축물이며, 환승센터를 위한 교량 구조물, 가로공원 등이 설치되는 복합기능의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향후 인천시에 미치는 경관적 영향을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바람.	○ 기본 및 실시설계시 검토 반영하겠음	반영
	○ 인천광역시 시가지·야간경관계획 및 도시경관가이드라인,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할 것. (관련자료 출처 : www.webhard.co.kr, ID = flyic, PW = 1234)	○ 기본 및 실시설계시 관련지침을 검토 반영하겠음	반영
	○ 본 사업대상지는 향후 주변지역에 경관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므로, 위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건축위원회(건축·경관·교통 공동) 심의를 득하시기 바람.	○ 추후 관련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시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절차를 이행하겠음	반영
계양구청	○ 주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야간경관의 조성이 가능하고 우리 구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Landmark적 시설물(조형물) 설치를 통하여 도시브랜드 강화에 기여하고 고품격의 도로경관 연출방안 병행 모색	○ 기본 및 실시설계시 검토 반영하겠음	반영
	○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따른 기계식 자전거주차장(공간) 확대 설치	○ 교통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지하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반영하였음	반영
	○ 작전역 부근의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의 공사 중 주차시설 이용에 관한 대책 마련	○ 사업부지외 남·북간 녹지 부분에 임시 주차장 설치 검토 반영하겠음	반영
	○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영향이 주변지역 상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득이 될 수 있도록(win-win 효과) 시너지 효과 방안 마련	○ SSM[4]배제 및 주변 상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테넌트[5] 계획을 검토 하겠음	반영
	○ 작전동 366-9번지 외 아래 국유지(국토해양부 소유)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시 무상귀속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	○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겠음	반영

4) SSM(Super Supermarket) : 기업형 슈퍼마켓, 연면적 990~3300㎡ 규모로 대형마트에 비해 출점이 용이하고 가공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 달리 채소, 생선 등 농축산물도 판매

5) 테넌트(Tenant) : 임대 또는 반임대(반직영)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점

협의부서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계양구청	<table><tr><th rowspan="2">번호</th><th rowspan="2">지 번</th><th rowspan="2">지목</th><th colspan="2">면 적 (㎡)</th><th rowspan="2">소유자</th><th rowspan="2">비고</th></tr><tr><th>대장 면적 (㎡)</th><th>편입 면적 (㎡)</th></tr><tr><td>1</td><td>작전동 366-9번지</td><td>구</td><td>170</td><td>170</td><td>국토 해양부</td><td></td></tr><tr><td>2</td><td>작전동 522-8번지</td><td>도</td><td>111</td><td>80</td><td>국토 해양부</td><td></td></tr><tr><td>3</td><td>작전동 522-9번지</td><td>도</td><td>97</td><td>97</td><td>국토 해양부</td><td></td></tr><tr><td>4</td><td>작전동 522-11번지</td><td>도</td><td>250</td><td>250</td><td>국토 해양부</td><td></td></tr><tr><td>5</td><td>작전동 524-1번지</td><td>도</td><td>403</td><td>403</td><td>국토 해양부</td><td></td></tr><tr><td>6</td><td>작전동 845-1번지</td><td>구</td><td>415</td><td>415</td><td>국토 해양부</td><td></td></tr><tr><td>7</td><td>작전동 847-5번지</td><td>도</td><td>81</td><td>81</td><td>국토 해양부</td><td></td></tr></table> ○ 인근 거주지역 (공동주택 등)과 연접하여 소음, 진동,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야기가 예상되는 바, 저감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함. ○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(별표1)“환경기준”을 준수하되 법적소음 기준치보다 주민체감 소음도를 예측하여 방음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○ 동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・도지사이므로 인천광역시(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)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함 << 검토항목 >> -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-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본부장이 고시한 사항 등	○ 소음, 진동, 분진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, 주기적인 살수 실시, 저소음・저진동 소음장비 및 공법 사용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○ 본 사업지구 내 입지할 시설물로는 판매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업무시설 등으로 시설물의 특성상 창문을 지속적으로 개폐하고 생활하는 시설물들이 아닌 바, 주민체감 소음도는 건물외곽 기준으로 예측을 실시한 예측소음도보다는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, 관련법에 의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○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협의하였음	반영 반영 반영

협의부서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도시철도 건설본부	○ 의견없음	-	-
수도권 교통본부	○ BRT 정류장 캐노피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4일 중간보고 회의시 Land Mark 수준이 되도록 디자인을 변경하라는 의견이 있고, ○ 총사업비 조정(기획재정부)과 관련하여 교량 구조물 외는 추가 투자가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주체가 설치(교량구조물과 별도 구조로 설계)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.	○ 대형화 및 디자인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시 협의토록 하겠음 ○ 기본 및 실시설계시 관련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겠음	반영 반영